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대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

발의의원 : 이대곤 의원, 김정태 의원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위원 정수의 명확화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3인이상 5인이하”를 “5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결산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.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조(결산검사위원의 정수) ----- ----- -- 5인----- ----- ----- -----.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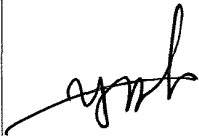
□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(감사위원의 선임)

-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이 대 곤	이 대 곤	
김 정 태	김 정 태	